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2
------	-----

제출년월일 2001. 10. 6 .

제 출 자 평 창 군 수

□ 제안이유

- 2001. 1. 12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창군공설묘지가 설치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기존 평창군 공설묘지설치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제명)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를 「평창군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로 함
- (목적) 평창군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제1조)
- (정의) 장묘시설이라 함은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 등을 말함(안제2조)
- (사용자의 자격)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자 등(안제4조)
- (묘지의 면적) 매장분묘의 기본면적은 6.75㎡(1.5m×4.5m)로하고,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기본면적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음(안제5조)
- (분묘의 구조등) 분묘의 구조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매장 분묘의 형태는 평분형으로하고 분묘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안제6조)
- (사용기간) 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안제11조)
- (사용료 등)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2」와 같다. 단, 사용료 등은 허가완료된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함(안제13조)
- (분묘 등의 관리책임) 공설묘지내 분묘 등의 관리책임은 군수에게 있고

이에 따른 관리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함(안제17조)

- (위탁운영) 군수는 공설묘지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제18조)
- (관리사무소의 설치) 묘지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평창군공설묘지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함(안제21조)
- (금지행위) 묘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제23조)
 -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등

□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예산 조치 : 관리사무소운영, 인건비 등 소요
-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01-214(2001. 6. 28)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묘시설’이라 함은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 등을 말한다.
2. ‘묘지’라 함은 개선된 분묘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3. ‘납골시설’이라 함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납골묘 또는 납골탑, 납골당(단)등의 시설을 말한다
4.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월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5.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사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및위치) 장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사용자의 자격) 장묘시설을 사용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항 각호의 1과 같다.

① 공설묘지사용자의 자격

1.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자
2. 타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평창군공설묘지에 가족(직계존·비속)이 매장되

어 있는자

3. 본적 또는 원적을 평창군에 두고 사망한 자 중 평창군에 직계존·비속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평창군관내 사업장내의 유연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의 매장을 원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토지기부채납등)

② 납골시설 사용자의 자격

1. 평창군 공설묘지에 매장된 유골을 수거하여 안치할 경우(마을공동묘지 제외)
2. 제1항의 공설묘지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자가 시체를 화장하여 유분을 매장 또는 보관할 경우
3.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평창군 관내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매장 또는 보관할 경우
4. 평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묘지의 면적) 묘지의 1기당 사용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장분묘의 기본면적은 6.75제곱미터(1.5m×4.5m)로 하고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기본 면적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다.
2. 배우자중 어느 한쪽이 먼저 사망하여 생존자가 예약신청하는 경우에는 1기를 추가하여 연접사용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분묘의 구조 등) ①분묘의 구조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매장분묘의 형태는 평분형으로 하고, 분묘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분묘의 묘비 등 석물의 종류, 모형, 규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군수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권의 소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사용허가일로부터 1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장묘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제1호의 기간내에 신고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3회연장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1조(사용기간) ①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납골당 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①납골당의 유골 안치기간은 15년 단위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분묘개장 유골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은 10년으로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설묘지내 합동매장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등) ①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사용료등’ 이라한다)는 별표2와 같다. 단, 사용료등은 최초 사용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납부된 사용료등은 허가완료된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공설묘지 주변 지가변동 및 물가상승율, 경제여건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을 조정 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3. 사용료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장묘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권자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5조(수거 및 개장명령등) ①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개장 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합동매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다.

제16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군수는 사용자가 장묘시설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분묘 등의 관리책임) 공설묘지내 분묘 등의 관리책임은 군수에게 있고 이에 따른 관리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위탁운영) 군수는 공설묘지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관리사무소 설치) 묘지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평창군공설묘지관리사업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①장묘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평창군묘지관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설묘지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자격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조정 및 감면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평창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23조(금지행위) 묘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묘역안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의 우려가 있는 행위
5. 묘역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6. 일몰후 참배하는 행위
7. 고성방가, 난동, 음주 등 건전한 풍속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제24조(묘적부등) 군수는 장묘시설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기록한 묘적부 및 납골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장묘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관련)

○ 평창군 공설묘지

명 칭	위 치
평창군 공설묘지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 692번지
평창군 공설납골단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 692번지

○ 읍·면(마을공동)공설묘지

명 칭	위 치	면 적
평창읍 공설묘지	평창읍 중리 산11번지	9,917.4㎡
	평창읍 노론리 산84번지	13,223㎡
	평창읍 조동리 산15번지	8,264.5㎡
	평창읍 약수리 산7번지	4,959㎡
	평창읍 조둔리 산73번지	6,611.6㎡
	평창읍 도둔리 산5번지	4,246㎡
	평창읍 마지1리 산86번지	331㎡
	평창읍 여만리 산18번지	5,455㎡
	평창읍 후평리 산7번지	1,652.9㎡
	평창읍 후평리 산28번지	1,652.9㎡
	평창읍 다수리 산28번지	1,726㎡
	평창읍 주진리 산195번지	6,611.6㎡
	평창읍 용항리 산78번지	2,645㎡
미탄면 공설묘지	미탄면 창2리 산46번지	227,207㎡
	미탄면 창3리 산2-1번지	22,662㎡
	미탄면 울치리 산59번지	32,066㎡
	미탄면 회동리 산17-2번지	7,240㎡
	미탄면 평안1리 산79번지	531,671㎡
	미탄면 백운리 산27번지	246,017㎡
	미탄면 기화리 산43번지	4,463㎡
	미탄면 마하리 산53번지	29,752㎡
방림면 공설묘지	방림면 방림리 680번지	1,806,763㎡
	방림면 방림리 263번지	1,413,763㎡
	방림면 운교리 263번지	952,067㎡

명 칭	위 치	면 적
대화면 공설묘지	대화면 하안미3리 산511번지 대화면 하안미5리 산205번지 대화면 상안미2리 산571-1번지 대화면 신4리 산213번지	8,727㎡ 15,878㎡ 5,488㎡ 4,364㎡
봉평면 공설묘지	봉평면 평촌2리 산40번지 봉평면 유로2리 산398번지 봉평면 흥정리 산13번지 봉평면 유포1리 산89번지 봉평면 원길1리 산249-2번지 봉평면 덕거2리 산184번지	19,834㎡ 9,917.4㎡ 9,917.4㎡ 5,355㎡ 14,876㎡ 19,834㎡
용평면 공설묘지	용평면 용전리 산40번지 용평면 장평1리 산137번지 용평면 속사2리 산128-1번지 용평면 노동리 산175번지 용평면 백옥포리 산28번지	9,900㎡ 6,333㎡ 14,269㎡ 3,369㎡ 12,784㎡
진부면 공설묘지	진부면 하진부5리 산3번지 진부면 하진부6리 산19번지 진부면 상진부2리 산27번지 진부면 송정2리 산309번지 진부면 두일리 산66번지	270,468㎡ 2,505,660㎡ 90,882㎡ 153,632㎡ 122,255㎡
도암면 공설묘지	도암면 용산리 산229번지	3,305.8㎡

【별표2】

장묘시설의 사용료등(제13조제1항관련)

○ 평창군 공설묘지(방림면 방림리 산692번지)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계	사용료	관리비
묘 지	2평형 단장 (6.75㎡)	987,000	747,000	240,000
	3평형 합장 (9.9㎡)	1,455,000	1,095,000	360,000
납골단	1구당(15년사용)	166,000	166,000	-

○ 읍·면(마을공동)공설묘지

구 분	기 준	계	사용료	관리비
묘 지	2평형 단장 (6.75㎡)	4,000	4,000	
	3평형 합장 (9.9㎡)	6,000	6,000	

관 계 법 령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도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매장자수·화장자수 및 납골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3.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존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시·도 및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예 산 소 요 액

인 건 비	관리사무소운영비	비 고
81,021,460원	6,980,000원	○ 인건비 : 9급 1명, 기능10급 4명 (봉급,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 운영비 : 공과금, 유류대, 장비유지관리비등

"HAPPY 700 평창, 국민의고향"

평 창 군

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0374)330-2311/FAX(0374)330-2334
 ☆환경복지과 과장 신만희 사회복지담당 최원규

문서번호 환복 65130 - 1380

시행일자 2001. 6 . 28

(경 유)

받 음 받는곳참조

참 조 복지 담당

보존기관	3년	군 수	
공개여부	공 개		
부군수			1
과 장			
담 당			
기안자	최원규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 목 평창군공설묘지관리 및 사용조례(안) 입법예고의뢰

1.장사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시행에 따른 평창군공설묘지관리및사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니

2.기획실에서는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을 군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
 라며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결과를 2001. 7.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 임: 입법예고 공고문 및 평창군 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 각1부 끝

평 창 군 수

받는곳참조: 기획실장. 도 (1-8)



평창군 공고 제2001-244호

평창군 공설묘지관리 및 사용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공설묘지관리 및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행정절차법 41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 6월21일

평 창 군



1. 개 정 이 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장사등에관한법률」로전문개정(2000.1.12)됨에따라 동법에서 위임된사항과 평창군공설묘지가 설치됨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기위함

2 주 요 내 용

- 가. (정의) 장묘시설이라 함은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 등을 말함(안제2조)
- 나. (사용자의자격)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자 등 (안제4조)
- 다. (묘지의면적) 매장분묘의 기본면적은 6.75㎡(1.5m×4.5m)로하고 합장하는 경우에는 1기당 기본면적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초과사용할 수 있음(안제11조)
- 라. (분묘의구조등) 분묘의 구조는 군수가 정한구조로 설치하여야하며 매장분묘형태는 평분형으로하고 분묘의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함 (안제6조)
- 마. (사용기간) 묘지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음 (안제11조)
- 바. (사용료등)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한다)는 별표2와 같다 단.사용료 등은 최초사용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한다(납부된 사용료등은 허가완료된 후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안제13조)
- 사. (관리사무소의설치) 묘지조성과 관리를위하여 평창군공설묘지관리사무소를 설치할수있으며, 그조직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정함(안제21조)
- 아. (금지행위) 묘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안제23조)

3. 의 견 제 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주소: 평창군 평창읍하리 210 평창군청 참조 환경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 나. 성명(단체의경우 단체명과 그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복지과 (전화 330-2311 팩스330-233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세기 신사고 활기찬 평창"
평 창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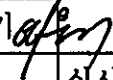
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210-2/(0374)330-2311/FAX(0374)330-2334
 ☆환경복지과 사회복지계 과장 조규식 담당 여운기

문서번호 환복 65100 - 2907
 시행일자 2001. 9. 22

(경 유)

받 음 내 부 결 재

참 조

보존기관	3년	군	수	
공개여부	공 개			
부 군 수		/		
과 장	전 결			
담 당				
기 안 자	여운기 			협조
심 사 자		심사일		

제 목 입법예고 결과 보고

평창군공설묘지관리및사용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이 없으므로 서식생략 보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게시결과 보고서(읍면) 8부. 끝.

평 창 군 수